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석기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581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0일

발의자 : 전석기 의원(1명)

찬성자 : 김기대, 김기덕, 김재형,
김정태, 김제리, 김태수,
김평남, 박기열, 박기재,
박상구, 박순규, 송명화,
이광호, 이성배, 이영실,
이태성, 장상기, 최웅식,
황규복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개선하고, 실내 활동이 높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보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“실내형 공개공간” 도입 필요
- 미세먼지, 폭염,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내 보행 활동 확보 공간 및 보행자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실내 공공공간 마련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실내형 공개공간(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)의 정의를 규정하고, 최소면적 · 최소폭 · 층수 등 설치기준을 마련(안 제26조 제2항 제7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에서 정하는 공개공지 등으로서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(이하 “실내형 공개공간”라 한다.)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가.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나. 최소면적 150m²이상인 경우 : 최소폭 6m이상, 최소높이 : 층수 2개층 이상
- 다. 최소면적 500m²이상인 경우 : 최소폭 9m이상, 최소높이 : 층수 3개층 이상
- 라. 최소면적 1,000m²이상인 경우 : 최소폭 12m이상, 최소높이 : 층수 4개층 이상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제26조(공개 공지 등의 확보) ① (생 략)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 다. 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 | 제26조(공개 공지 등의 확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</u> <u>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에서</u> <u>정하는 공개공지 등으로서 기</u> <u>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</u> <u>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</u> <u>는 공개공간(이하 “실내형 공</u> <u>개공간”라 한다.)의 경우에는</u> <u>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</u> <u>따른다.</u> <u>가.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</u> <u>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</u> <u>공간으로 설치</u> <u>나. 최소면적 150m²이상인 경</u> <u>우 : 최소폭 6m이상, 최소</u> <u>높이 : 층수 2개층 이상</u> <u>다. 최소면적 500m²이상인 경</u> |

③ ~ ⑥ (생략)

우 : 최소폭 9m이상, 최소

높이 : 층수 3개층 이상

라. 최소면적 1,000m²이상인 경

우 : 최소폭 12m이상, 최소

높이 : 층수 4개층 이상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